

태료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.

- 미성년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
족보호대상자, 장애인(3급이상), 국가유공자
(상이등급 3급 이상), 해당 미등록 이륜차를
사용 신고하신 분은 의견 제출기간에 자료제

출 시 50%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
습니다(단, 과태료 체납자 제외).

○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악구
청 교통행정과(02-879-6871)로 문의주시기
바랍니다.

[붙임]

☐ 위반내역

연번	대 상 자		과세대상	과태료 사전통지 금액(원)*	위반내용	위반법규	부과월
	성명	주소					
1	김동*	서울 관악 서림7길**	서울관악타 15**	320,000	봉인탈락	자동차관리법제 49조제2항	2021-03
2	김성*	서울 관악 남부순환로161길**	54루76**	400,000	번호판가림	자동차관리법제 10조제5항	2021-03
3	김영*	서울 관악구 청림3마길17-**	41주55**	400,000	번호판가림	자동차관리법제 10조제5항	2021-03
4	최성*	서울 관악구 은천로21-*	14너20**	400,000	번호판가림	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	2021-03

※ 사전통지금액 : 부과예정금액에서 20% 감경된 금액

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1-662호 봉천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·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195(2013. 6. 20.)
호로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
시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-264(2018. 8.
23.)호로 일몰기한 연장 고시된 우리구 봉천
동 923-1번지 일대 「봉천2역세권 장기전세
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」에 대하여 「도시
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1항 및 제3항
에 의거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
다음과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
2.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공람
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

내 관악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의견서
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2021년 4월 8일

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가. 공람기간 : 2021. 4. 8. ~ 2021. 5. 10.

나. 공람장소 : 관악구청 도시계획과(☎
02-879-6361)

다. 공람내용 : 봉천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
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

1) 정비구역의 해제

가) 정비사업의 명칭 : 봉천2역세권 장기전
세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

나)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

구 분	정비사업 명칭	위 치	면 적(㎡)	비고
기 정	봉천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	관악구 봉천동 923-1번지 일대	6,759.2	2013.06.20. (서고시 제2013-195호)
변 경	해 제			

※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2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, 정비기반
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봄.

다) 정비계획 폐지

① 토지이용계획(변경)

구분	명칭	면적(㎡)			비율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계		6,759.2	-	6,759.2	100.0	-
정비기반 시설 등	소계	1,487.9	감) 450.5	1,037.4	15.3	-
	도로	546.0	증) 491.4	1,037.4	15.3	-
	광장	941.9	감) 941.9	-	-	-
획지	소계	5,271.3	증) 450.5	5,721.8	84.7	-
	획지1	5,271.3	증) 450.5	5,721.8	84.7	-

주) 변경후 도로면적은 도시계획시설로 미결정된 현황 도로면적임

※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

② 용도지역 결정(환원)

구분	면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
소계	6,759.2	-	6,759.2	100.0	-
제3종일반주거지역	-	증) 6,759.2	6,759.2	100.0	-
준주거지역	6,759.2	감) 6,759.2	-	-	-

※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

③ 용도지구 결정 : 변경없음

④ 정비기반시설(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

가) 도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중로	3	2	12	국지 도로	56	봉천동 923-2	봉천동 912-12	일반 도로	-	-	-
변경	소로	3	8	6	국지 도로	56	봉천동 923-2	봉천동 912-12	일반 도로	-	-	환원
기정	소로	2	2	9	국지 도로	56	봉천동 926-29	봉천동 923-17	일반 도로	-	-	-
변경	소로	3	7	6	국지 도로	56	봉천동 926-29	봉천동 923-17	일반 도로	-	-	환원

※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

나) 광장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지	①	광장	일반 광장	봉천동 923-14 번지 일대	941.9	감) 941.9	-	서고시 제2013-195호 (13.6.20.)	-

※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

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: 해당사항 없음

⑥ 건축물의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:
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

⑦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
한 계획 :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

⑧ 정비사업 시행계획 : 정비구역 지정 이

전으로 환원

⑨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: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

⑩ 임대(장기전세)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: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

2)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

가)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: 변경없음

나) 특별계획구역 E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

① 특별계획구역 E 결정(변경)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변경	봉천동 특별계획구역 E	관악구 봉천동 923-1번지 일대	6,759.2	감) 1.2	6,758.0	-

※ 면적차이(1.2㎡)는 대장 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.

※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

②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

㉠ 특별계획구역 주요 결정내용(변경)

구분	기 준	변 경	비고
용도지역	• 준주거지역	• 제3종일반주거지역	
건폐율	• 60% 이하	• 60% 이하	
용적률	• 기준용적률 : 250% 이하 • 허용용적률 : 450% 이하 • 상한용적률 : 500% 이하	• 기준용적률 : 250% 이하 • 허용용적률 : 350% 이하 • 상한용적률 : 400% 이하	
높이	• 최고높이 80m 이하	• 최고높이 70m 이하	-
허용용도	•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, 교육연구시설(학원, 도서관), 문화 및 집회시설, 노유자시설, 판매시설, 제1종근린생활시설, 제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, 고시원 제외), 주거복합시설(단,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은 90% 미만) ※ 허용용도외의 용도는 불허, 지상1~3층 주거용도 불허	•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, 학원, 판매시설, 제1·2종근린생활시설 ※허용용도외의 용도는 불허용도	-
권장용도	•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, 판매시설, 주거복합시설(단,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은 90%미만)	•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, 학원, 판매시설	-
건축선	• 남부순환도로변 : 건축한계선 5m • 봉천북개도로변 : 건축한계선 5m • 그 외 대지경계 : 건축한계선 1m	• 남부순환도로변 : 건축한계선 5m • 봉천북개도로변 : 건축한계선 3m • 그 외 대지경계 : 건축한계선 1m	-

※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2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,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.

라. 해제사유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1항 제3호

- 정비구역으로 지정·고시된 날('13.06.20.)부

터 5년이 되는 날('18.06.19.)까지 사업 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정비구역 해제(일몰기한)를 연장하였으나, 연장 만료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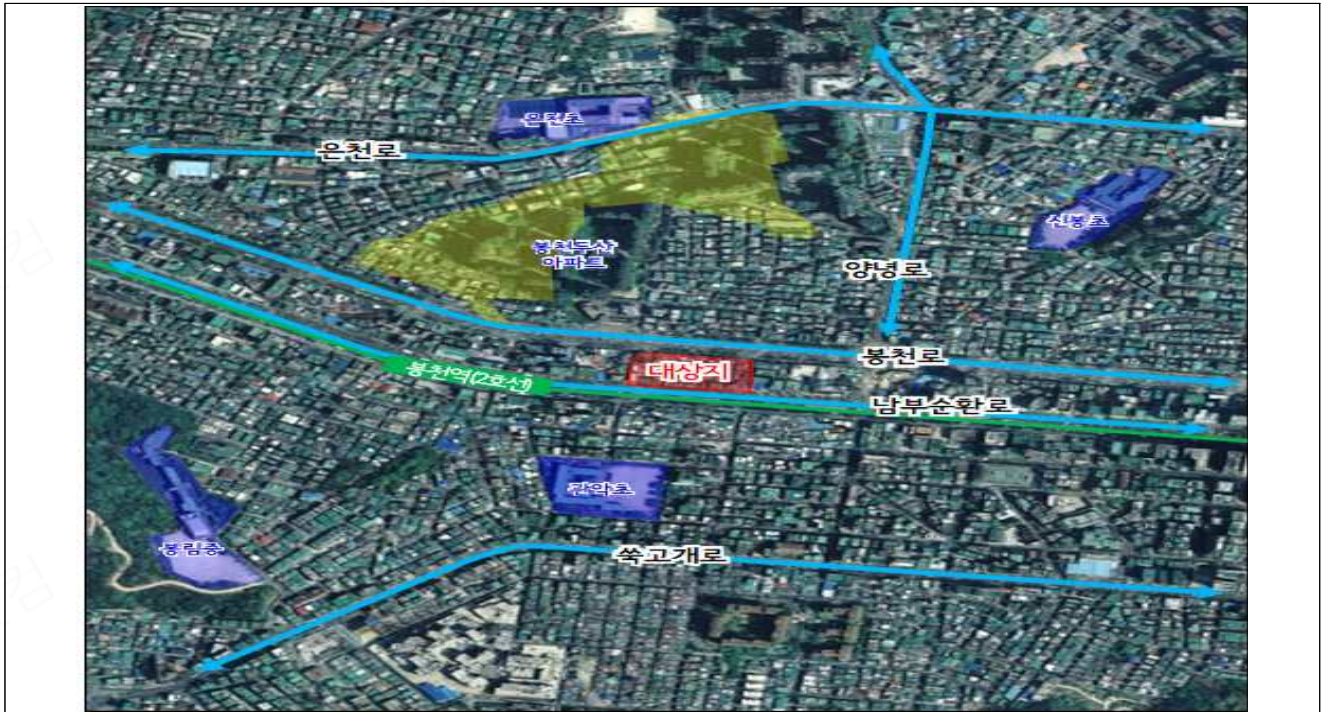
(‘20.06.19.)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
아니하여 정비구역 해제
마. 공람의견 제출장소 : 관악구청 도시계획

과(☎02-879-636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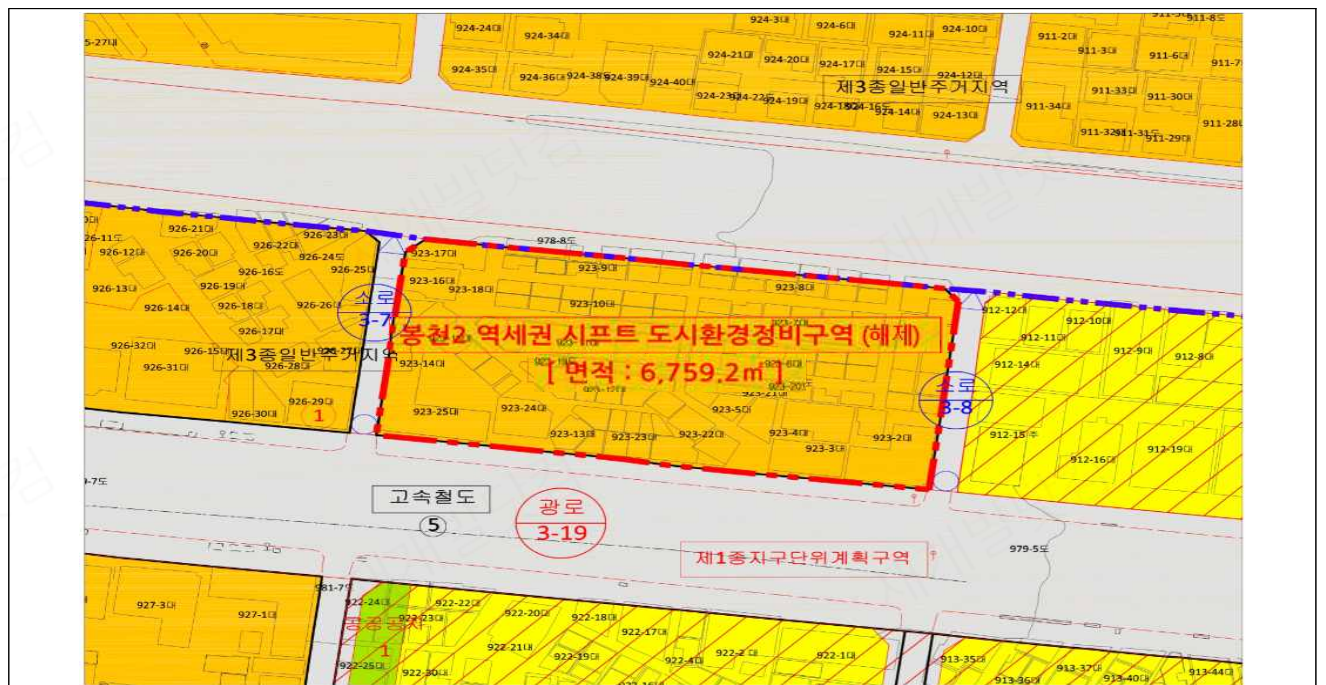
바. 의견제출 기간 : 공람기간 내

사. 위치도 및 관계도면 : 붙임 참조

□ 위 치 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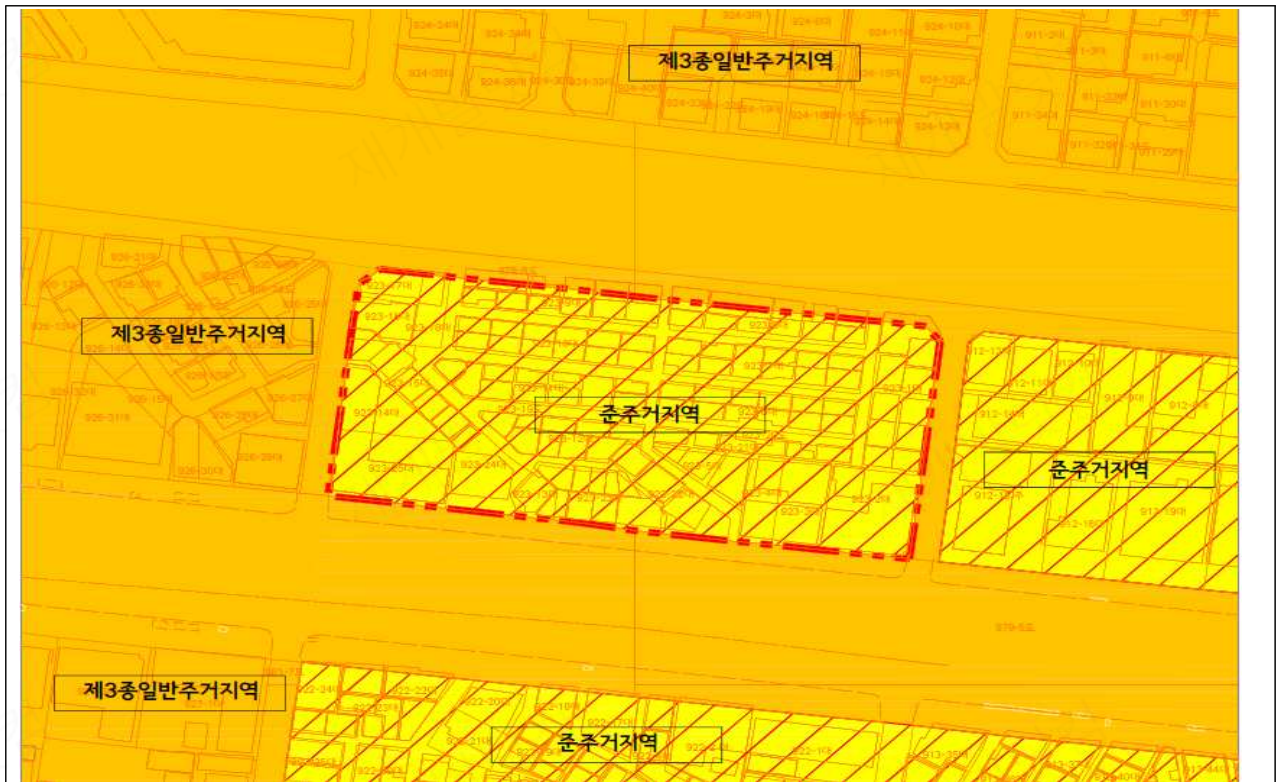


□ 정비구역 결정도 : 해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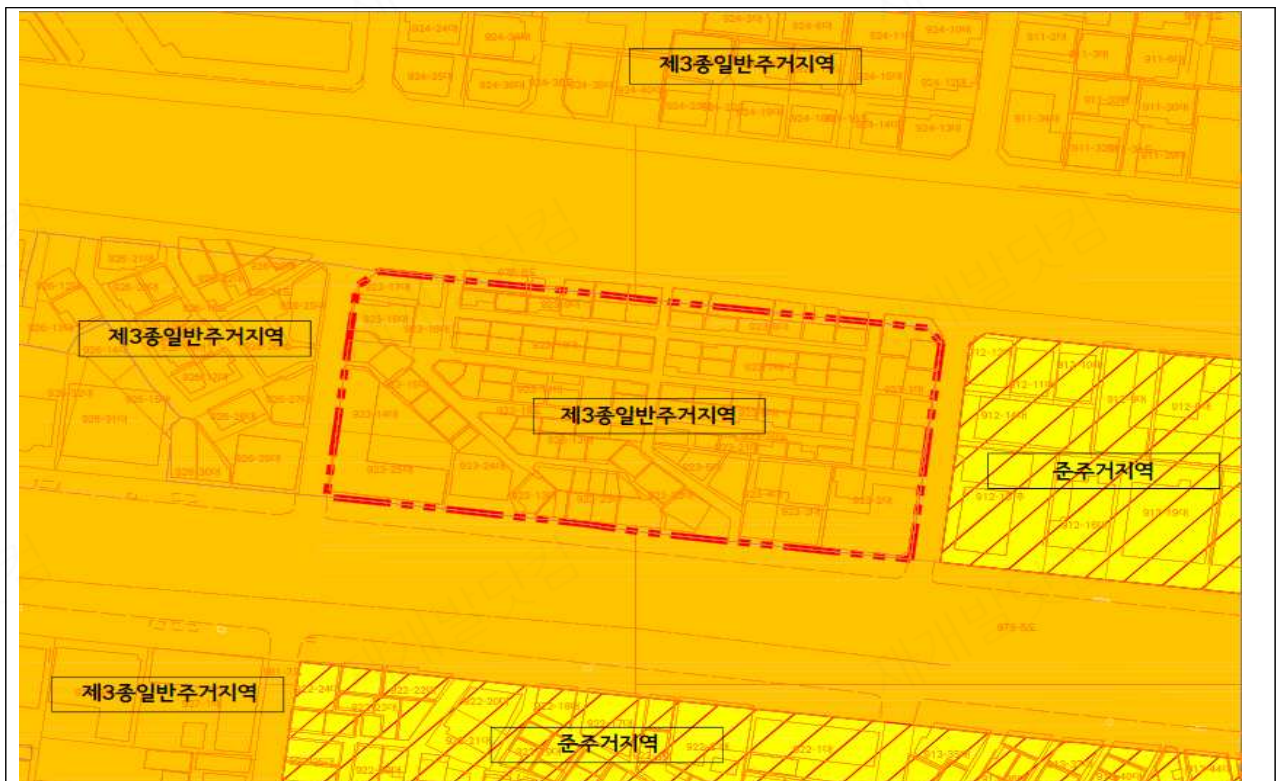


※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2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,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.

□ 용도지역 결정(기정)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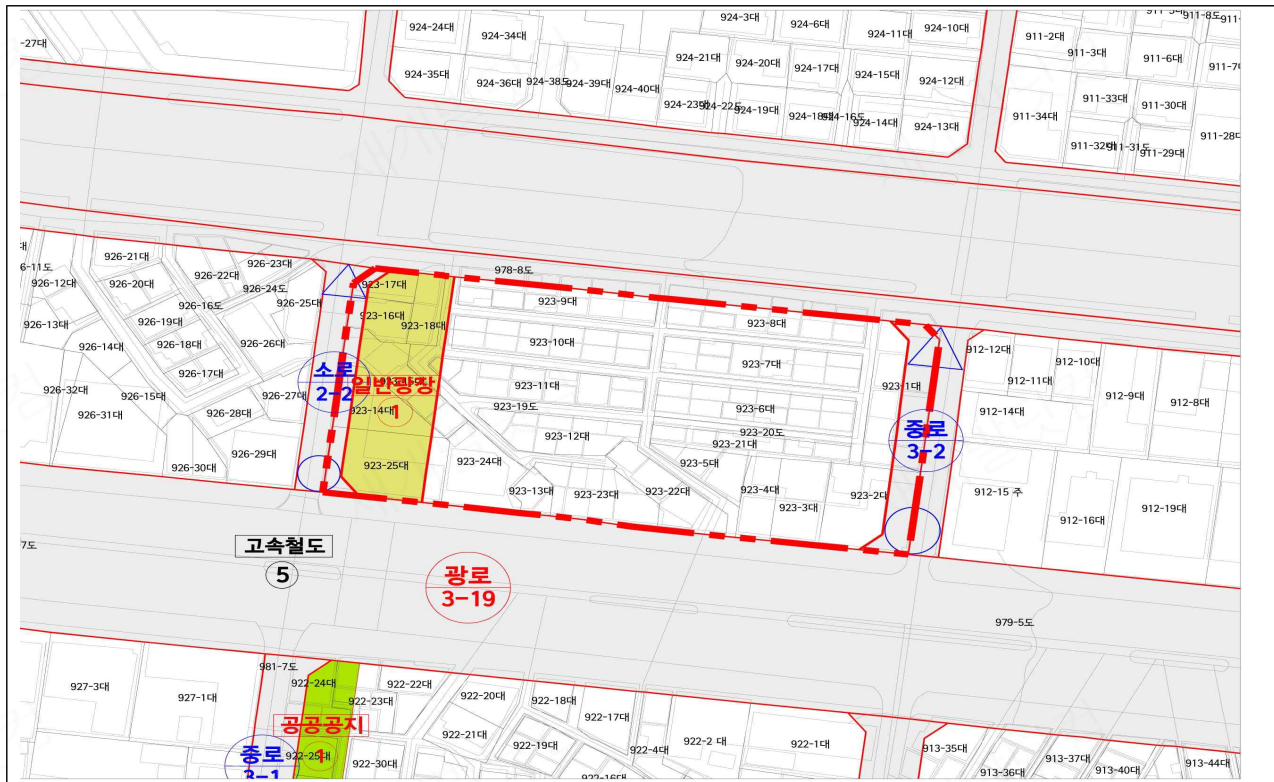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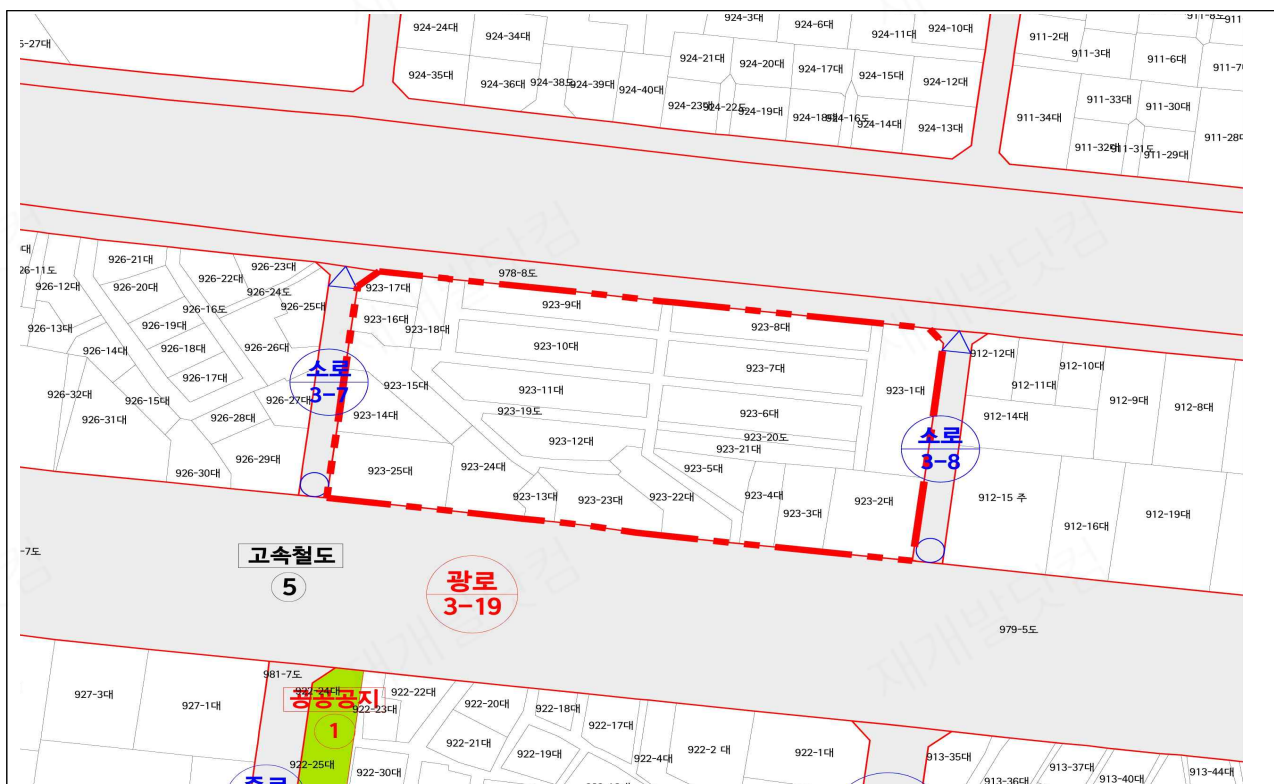


□ 용도지역 결정(변경)도



※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2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,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.

☐ 도시기반시설 결정(기정)도

☐ 도시기반시설 결정(변경)도

※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2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,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.

